

정 정 신 고 (보 고)

2016년 9월 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일괄신고서

삼성스마트플랜실버K증권투자신탁 제1호[채권혼합]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1.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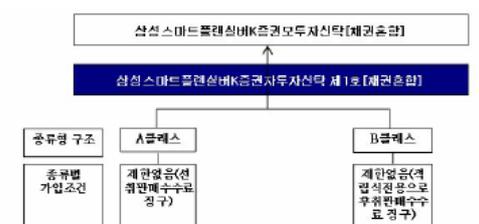
3. 정정 내용 :

- 모자형 투자신탁으로 변경 및 이에 따른 펀드명 변경

4.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표지	작성기준일 : 2016.7.19	작성기준일 : 2016.9.5
펀드명	삼성스마트플랜실버K증권투자신탁 제1호[채권혼합]	삼성스마트플랜실버K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혼합]
요약정보	<p>펀드명:삼성스마트플랜실버K증권투자신탁 제1호 [채권혼합]</p> <p>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되,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분류: (추 가)</p> <p>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가.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되,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입니다. 나.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금융공학기법의 활용 및 탄력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제한된 위험하에 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와 사전 자동환매약정을 맺은 뒤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p>	<p>펀드명:삼성스마트플랜실버K증권자투자신탁 제1호 [채권혼합]</p> <p>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대부분의 자산을 삼성스마트플랜실버K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에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을 추가하는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입니다. 분류: 모자형</p> <p>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 및 국내주식에 분산투자 하되, 국내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입니다.</p>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p>마련하는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판매회사와 정기자동환매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자동환매로 인해 수익자의 보유좌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환매로 인해 수익자의 보유좌수가 모두 소진된 경우에는 더 이상 환매가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의 성과가 저조하거나 원본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보유좌수가 더 빨리 소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규모도 지속적인 환매로 인해 소규모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효율적인 운용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p> <p>라. 이 투자신탁은 일반 투자신탁과 동일하게 거치식, 적립식, 임의식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노후 설계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을 노후 설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투자자에 따라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노후설계용으로의 활용 시에는 그 적합성 및 활용 방법 등에 대해 판매회사의 상담직원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투자자의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p> <p>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주식관련 자산(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을 포함),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하되, 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주식 투자 비중을 조절할 계획입니다.</p> <p>3. 운용전문인력 -</p> <p>4. 투자실적 -</p> <p>(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주식관련 자산(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을 포함),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하되, 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주식 투자 비중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이하 생략)</p>	<p>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 및 국내주식에 분산투자하되, 국내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하는 삼성스마트플랜실버K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으로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p> <p>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업데이트</p> <p>(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 및 국내주식에 분산투자하되, 국내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하는 삼성스마트플랜실버K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으로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이하 생략)</p>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삼성스마트플랜실버K증권투자신탁 제1호[채권혼합]	삼성스마트플랜실버K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채권혼합]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추 가)	마. 특수형태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구성)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	삼성스마트플랜실버K증권투자신탁 제1호[채권]	삼성스마트플랜실버K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채권]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구의 명칭	혼합]	혼합]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 가)	<table border="1"> <tr> <td>변경시행일</td> <td>변경 사항</td> </tr> <tr> <td>2016.9.12</td> <td>모자형으로 변경</td> </tr> </table>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6.9.12	모자형으로 변경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6.9.12	모자형으로 변경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p>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추 가)</p>  <p>다. 모자형 구조 (추 가)</p> <p>(추 가)</p>	<p>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모자형</p>  <p>다. 모자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fund.com)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mns00_모자형구조</p> <p>(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p> <table border="1"> <tr> <td>모투자신탁명</td> <td>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d> </tr> <tr> <td>주요투자</td> <td>주식 50% 이하, 채권 95%</td> </tr> </table>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주요투자	주식 50% 이하, 채권 95%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주요투자	주식 50% 이하, 채권 95%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대상	<p>이하,장내파생상품 ,장의 파생상품</p>
		투자목적	<p>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되,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입니다.</p> <p>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금융공학기법의 활용 및 탄력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제한된 위험하에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와 사전 자동환매 약정을 맺은뒤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판매회사와 정기자동환매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자동환매로 인해 수익자의 보유좌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환매로 인해 수익자의 보유좌수가 모두 소진된 경우에는 더 이상 환매가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의 성과가 저조하거나 원본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보유좌수가 더 빨리 소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규모도 지속적인 환매로 인해 소규모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효율적인 운용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p> <p>1)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주식관련 자산(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을 포함),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하되, 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기위해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주식 투자 비중을 조절 할</p>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삼성스마트플랜실버K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p>계획입니다.</p> <p>2) 기본운용전략</p> <p>① 투자신탁 재산의 95% 이하를 채권에 투자하여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수익 및 자본수익을 추구 합니다.</p> <p>②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 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 품에 투자하되, 주식관련 자산에의 투자비중(파생상 품 투자에 따른 위험평가 액 포함)은 주식시장의 변 동성 등을 고려해서 전략 적으로 결정합니다.</p> <p>3) 주식운용전략</p> <p>①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 단 계의 하락위험 방어선을 사전에 정해 두고, 펀드의 성과 및 시장 상황 등에 따 라 주식관련 자산에의 투 자비중을 적절히 조절하여 포트폴리오의 가치 하락 위험을 제어할 예정입니다 .</p> <p>②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변동성이 커질 경우 주식관련 자산을 축 소하고 변동성이 작아질 경우 주식관련 자산을 증 가시킬 예정입니다.</p> <p>③ 주식관련 자산에의 투 자는 주식 및 ETF 등을 활 용하여 기본적으로 시장대 표지수(KOSPI200 지수 등)를 추종하도록 운용할계 획입니다. 그러나 시장상 황에 따라 개별주식을 통 한 Active 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차익거래 기회가 생길 경우 다양한 차익거래 전략을 활용하여 추가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p> <p>4) 채권운용전략</p> <p>- 국공채, 우량등급 채권,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 합투자증권(ETF 포함) 등 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 장상황이 불투명한 경우 만기가 짧은 채권과 만기</p>

주요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table border="1"> <tr> <td data-bbox="855 237 954 432"></td> <td data-bbox="954 237 1054 432"></td> <td data-bbox="1054 237 1337 432">가 긴 채권을 편입하는 바 별형 전략 등을 추구할 수 있으며, 만기별 수익률을 고려하여 수익을 극대화기 전략도 실행할 수 있습니 다.</td> </tr> <tr> <td data-bbox="855 432 954 533">등록신청 서 제출 일</td> <td data-bbox="954 432 1054 533">2016. 9. 7</td> <td data-bbox="1054 432 1337 533"></td> </tr> </table>			가 긴 채권을 편입하는 바 별형 전략 등을 추구할 수 있으며, 만기별 수익률을 고려하여 수익을 극대화기 전략도 실행할 수 있습니 다.	등록신청 서 제출 일	2016. 9. 7													
		가 긴 채권을 편입하는 바 별형 전략 등을 추구할 수 있으며, 만기별 수익률을 고려하여 수익을 극대화기 전략도 실행할 수 있습니 다.																		
등록신청 서 제출 일	2016. 9. 7																			
7.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목적	<p>가.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되,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입니다.</p> <p>나.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금융공학기법의 활용 및 탄력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제한된 위험하에 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다.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와 사전 자동환매약정을 맺은 뒤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판매회사와 정기자동환매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자동환매로 인해 수익자의 보유좌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환매로 인해 수익자의 보유좌수가 모두 소진된 경우에는 더 이상 환매가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의 성과가 저조하거나 원본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보유좌수가 더 빨리 소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규모도 지속적인 환매로 인해 소규모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효율적인 운용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도 있습니다.</p>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 및 국내주식에 분산투자 하되, 국내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두 자산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증권투 자산신탁[채권혼합]입니다.																		
8.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대상	<p>가. 투자 대상</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60 1261 453 1330">투자대상</th> <th data-bbox="453 1261 560 1330">투자비율</th> <th data-bbox="560 1261 839 1330">투자대상 세부설명</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60 1330 453 1619">1) 주식</td> <td data-bbox="453 1330 560 1619">40% 이하</td> <td data-bbox="560 1330 839 1619">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 는 지분증권인 주권, 신주 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 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 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 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 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에 한함)</td> </tr> <tr> <td data-bbox="360 1619 453 1888">2) 채권</td> <td data-bbox="453 1619 560 1888">95% 이하</td> <td data-bbox="560 1619 839 1888">법 제4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 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취 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 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td> </tr> </tbody> </table>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40% 이하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 는 지분증권인 주권, 신주 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 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 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 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 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에 한함)	2) 채권	95%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 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취 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 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p>가. 투자 대상</p> <p>(1)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855 1294 954 1364">투자대상</th> <th data-bbox="954 1294 1054 1364">투자비율</th> <th data-bbox="1054 1294 1337 1364">투자대상 세부설명</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855 1364 954 1588">1) 삼성 스마트 플랜실 버K증권 모투자 신탁[채 권혼합]</td> <td data-bbox="954 1364 1054 1588">60% 이상</td> <td data-bbox="1054 1364 1337 1588">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식, 채권, 집 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되,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증 권투자신탁[채권혼합]입 니다.</td> </tr> <tr> <td data-bbox="855 1588 954 1888"></td> <td data-bbox="954 1588 1054 1888"></td> <td data-bbox="1054 1588 1337 1888">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 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 용할 수 있음 가.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 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td> </tr> </tbody> </table>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삼성 스마트 플랜실 버K증권 모투자 신탁[채 권혼합]	60% 이상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식, 채권, 집 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되,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증 권투자신탁[채권혼합]입 니다.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 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 용할 수 있음 가.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 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40% 이하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 는 지분증권인 주권, 신주 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 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 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 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 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에 한함)																		
2) 채권	95%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 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취 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 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삼성 스마트 플랜실 버K증권 모투자 신탁[채 권혼합]	60% 이상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식, 채권, 집 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되,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증 권투자신탁[채권혼합]입 니다.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 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 용할 수 있음 가.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 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권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2)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단,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두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40% 이하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3)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5) 집합투자증권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p>※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2)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p> <p>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2)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6) 장내파생상품	-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함		
7) 장외파생상품	-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함		<p>※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2)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p> <p>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p>
8) 단기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가.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	(2) 모두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아래의 투자대상은 모두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대출, 금융기관 예치	-		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다.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을 기재한 것으로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fund.com)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또는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스마트플랜실버K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9)환매조건부매도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 총액의 50% 이내로 환매조건부 매도 가능			
10)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 50% 이내로 증권 대여 가능	주식	50% 이하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11)증권의 차입	20% 이하		1), 2), 3), 4), 5)의 규정에 의한 증권 차입			채권
12)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주1) 상기 투자비용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주2)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2),3),4),5)의 투자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용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p> <p>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2),3),4),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위의 1),2),3),4),5)의 투자의 합(양도성 예금증서는 제외)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함. 다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은 투자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함</p>						
<p>※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9),10),11)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p> <p>①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②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③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p>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p>④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p> <p>⑤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p> <p>※채권의 신용등급이2)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채권을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3개월 이내에 해당 채권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p>										
	<p>나. 투자 제한</p>	<p>나. 투자 제한</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52 667 470 701">구분</th> <th data-bbox="470 667 746 701">투자제한의 내용</th> <th data-bbox="746 667 842 701">예외</th> </tr> </thead> </table>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p>(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제한</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842 667 960 701">구분</th> <th data-bbox="960 667 1236 701">투자제한의 내용</th> <th data-bbox="1236 667 1345 701">예외</th> </tr> </thead> </table>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table border="1"> <tbody> <tr> <td data-bbox="352 701 470 1182">이해관계 인과의 거래제한</td> <td data-bbox="470 701 746 1182">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p> </td> <td data-bbox="746 701 842 1182"></td> </tr> </tbody> </table>	이해관계 인과의 거래제한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p>		<table border="1"> <tbody> <tr> <td data-bbox="842 701 960 1182">이해관계 인과의 거래제한</td> <td data-bbox="960 701 1236 1182">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p> </td> <td data-bbox="1236 701 1345 1182"></td> </tr> </tbody> </table>	이해관계 인과의 거래제한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p>				
이해관계 인과의 거래제한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p>										
이해관계 인과의 거래제한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p>										
	<table border="1"> <tbody> <tr> <td data-bbox="352 1182 470 1899"></td> <td data-bbox="470 1182 746 1899">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td> <td data-bbox="746 1182 842 1899">최초설정일로 부터 1 개월간</td> </tr> </tbody> </table>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최초설정일로 부터 1 개월간	<p>(2)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제한</p> <p>아래의 투자제한은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중 일부만 기재한 것으로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에 대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fund.com)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또는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삼성스마트플랜실버K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842 1624 960 1657">구분</th> <th data-bbox="960 1624 1236 1657">투자제한의 내용</th> <th data-bbox="1236 1624 1345 1657">예외</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842 1657 960 1899"></td> <td data-bbox="960 1657 1236 1899">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td> <td data-bbox="1236 1657 1345 1899"></td> </tr> </tbody> </table>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최초설정일로 부터 1 개월간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p>	<p>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p> <p>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p>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p> <p>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p>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이100분의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1개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p>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동일회사 기초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매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 거래 상대방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같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파생상품 매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1개월간
투자한도 초과	<p>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제외)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p> <p>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p> <p>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p>				
장외파생 상품매매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다른 집합 투자증권 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으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사모집합 투자증권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 증권 보수 및 수수료 료등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p>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후순위채권에 투자</p>	<p>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p>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p>	<p>(1)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주식관련 자산(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을 포함),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하되, 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주식 투자 비중을 조절할 계획입니다.</p> <p>(2) 기본운용전략</p> <p>1) 투자신탁 재산의 95% 이하를 채권에 투자하여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 및 자본수익을 추구합니다.</p> <p>2)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되, 주식관련 자산에의 투자비중(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 포함)은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결정합니다.</p> <p>(3) 주식운용전략</p> <p>1)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 단계의 하락위험 방어선을 사전에 정해 두고, 펀드의 성과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식관련 자산에의 투자비중을 적절히 조절하여 포트폴리오의 가치 하락 위험을 제어할 예정입니다.</p> <p>2)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변동성이 커질 경우 주식관련 자산을 축소하고 변동성이 작아질 경우 주식관련 자산을 증가시킬 예정입니다.</p> <p>3) 주식관련 자산에의 투자는 주식 및 ETF 등을 활용하여 기본적으로 시장대표지수(KOSPI200 지수 등)를 추종하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 개별주식을 통한 Active 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차익거래 기회가 생길 경우 다양한 차익거래 전략을 활용하여 추가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p> <p>(4) 채권운용전략</p> <p>· 국공채, 우량등급 채권,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ETF 포함)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장상황이 불투명한 경우 만기가 짧은 채권과 만기가 긴 채권을 편입하는 바벨형 전략등을 추구할 수 있으며, 만기별 수익률을 고려하여 수익을 곡선 타기 전략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p>		<p>(1)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 및 국내주식에 분산 투자하되, 국내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삼성스마트플랜실버K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으로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p> <p>(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등에 대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fund.com)에 게시되어 있는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852 1003 1326 1888"> <thead> <tr> <th data-bbox="852 1003 995 1041">투자신탁명</th> <th data-bbox="995 1003 1326 1041">주요 투자 전략</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852 1041 995 1888"> <p>삼성스마트플랜실버K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p> </td> <td data-bbox="995 1041 1326 1888"> <p>1)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주식관련 자산(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을 포함),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하되, 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주식 투자 비중을 조절할 계획입니다.</p> <p>2) 기본운용전략</p> <p>① 투자신탁 재산의 95% 이하를 채권에 투자하여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 및 자본수익을 추구합니다.</p> <p>②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되, 주식관련 자산에의 투자비중(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 포함)은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결정합니다.</p> <p>3) 주식운용전략</p> <p>①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 단계의 하락위험 방어선을 사전에 정해 두고, 펀드의 성과 및 시장 상황 등에 따</p> </td> </tr> </tbody> </table>	투자신탁명	주요 투자 전략	<p>삼성스마트플랜실버K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p>	<p>1)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주식관련 자산(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을 포함),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하되, 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주식 투자 비중을 조절할 계획입니다.</p> <p>2) 기본운용전략</p> <p>① 투자신탁 재산의 95% 이하를 채권에 투자하여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 및 자본수익을 추구합니다.</p> <p>②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되, 주식관련 자산에의 투자비중(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 포함)은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결정합니다.</p> <p>3) 주식운용전략</p> <p>①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 단계의 하락위험 방어선을 사전에 정해 두고, 펀드의 성과 및 시장 상황 등에 따</p>
투자신탁명	주요 투자 전략						
<p>삼성스마트플랜실버K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p>	<p>1)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주식관련 자산(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을 포함),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하되, 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주식 투자 비중을 조절할 계획입니다.</p> <p>2) 기본운용전략</p> <p>① 투자신탁 재산의 95% 이하를 채권에 투자하여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 및 자본수익을 추구합니다.</p> <p>②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되, 주식관련 자산에의 투자비중(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 포함)은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결정합니다.</p> <p>3) 주식운용전략</p> <p>①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 단계의 하락위험 방어선을 사전에 정해 두고, 펀드의 성과 및 시장 상황 등에 따</p>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p>라 주식관련 자산에의 투자비중을 적절히 조절하여 포트폴리오의 가치 하락 위험을 제어할 예정입니다.</p> <p>②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변동성이 커질 경우 주식관련 자산을 축소하고 변동성이 작아질 경우 주식관련 자산을증가시킬 예정입니다.</p> <p>4) 채권운용전략 - 국공채, 우량등급 채권,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ETF 포함)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장상황이 불투명한 경우 만기가 짧은 채권과 만기가 긴 채권을 편입하는 바벨형 전략 등을 추구할 수 있으며, 만기별 수익률을 고려하여 수익률 곡선타기 전략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p>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p>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주식관련 자산(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을 포함),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하되, 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주식 투자 비중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이하 생략)</p>	<p>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 및 국내주식에 분산투자하되, 국내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하는 삼성스마트플랜실버K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으로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이하 생략)</p>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p>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투자신탁 관련 보수등 - 총 보수· 비용, 합성 총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보수포함), 증권거래비용</p>	<p>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투자신탁 관련 보수등 - 총 보수· 비용, 합성 총 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보수포함),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p>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라.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